

의안번호	제 933 호
의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의 안 번 호	933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5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의정활동 또는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의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기준으로서,
- 현행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 표창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대상, 포상종류(안 제2조 ~ 제7조)**
 - (대상) 의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원, 충청북도민 또는 단체
 - (종류) 표창장, 감사장, 상장
- **포상방법, 부상, 포상절차(안 제8조, 제9조)**
 -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 수여 가능
 - 15일 전까지 공적조서 제출 →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위원장(사무처장)포함 5인 구성, 간사 총무팀장
- **포상시기, 이중 포상금지(안 제11조, 제 12조)**
 - 정기시행 원칙, 같은 공적 이중포상 금지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1. 12. 6. ~ 12. 13.
-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충청북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충청북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현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

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포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성 명 :

(표 창 문)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성 명 :

(감사문)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 ○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성 명 :

(상장문)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 ○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 성명	(한자)							
(2)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국적 (외국인의 경우)	
(5) 주소								
(6) 직업				(7) 소속				
(8) 직위				(9) 등급 (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분야				
(12) 공적요지 (5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사자								
(15) 소속				(16) 직위				
(17) 직급				(18)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장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	포년 월 상일	포 상 종 별	포 상 기 관	피포상자				포상을 하게된 공적 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참 고
				직 또 직 명	위 또 주	소 속 는 소	성 별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의례적인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 되는 경우